



## 밭기반정비사업과 효율적 추진방안

최 상 오  
(강원도청 재난관리과장)

### 1. 서 언

#### 가. 우리농업의 환경변화

우리 농업은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겨레의 근본산업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자급자족 형태에서 최근에는 전문화된 기술로 유망작목을 재배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의 상업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WTO출범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국의 농산물 수입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농산물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앞으로 상업화 농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 농업환경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우리 농업이 발전해 갈수 있으므로 허약한 경쟁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국제환경속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나. 지방행정의 환경변화

1995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행정에 익숙해 있던 지방행정도 앞으로는 지역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미래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에 있어서도 지역특성

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업의 지방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 다. 우리 농촌의 실상

지금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농 규모(평균 1.3ha), 유능한 젊은 인력의 도시 유출, 날로 심각해지는 노동력부족 현상,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도농간의 소득격차등 현안과제가 산적한 데다 WTO체제 출범으로 국제강대 농업국과 경쟁해야 할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 2. 밭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

밭은 논보다 지형적 여건이 불리한 경사지, 산록등에 위치하여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논보다 4배의 노력이 필요하여 인력부족 현상과 힘든 일을 피하려는 현재의 상황을 보아 앞으로 이들 농지가 한계농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표-1. 년도별 경지이용률 변화

년도별	65	70	75	80	85	90	93	94
경지이용률(%)	157.8	151.3	140.4	120.4	120.4	113.3	110.4	107.3

자료 : 농림수산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경지이용률의 계속 하락과 함께 최근에는 농지의 유희화가 급증하고 있다.

표-2. 휴경농지 현황(1994년)

구 분	경지면적 (A) (ha)	휴경지면적 (B) (ha)	휴경률 (B/A) (%)
전 국	2,032,706	62,468	3.1

자료 : 농정기획 심의관실 농지관리과

표-3. 휴경농지 발생사유별 면적 및 비율

년도	단위	계	노동력	영농조건	부재지주	기타
			부족	불량	소유	
1994	천ha	62.5	27.7	15.4	17.4	2.0
	%	100	44.3	24.6	27.8	3.3

한편 표-3과 같이 1994년 휴경농지 발생원인별 면적 및 비율을 보면 노동력부족이 44%로 가장 큰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년도별 논밭별 휴경지 현황

(단위 : 백ha)

구 분		85	90	91	92	93	94
경 지 면 적	계(A)	21,444	21,088	20,909	20,699	20,548	20,327
	논(B)	13,249	13,453	13,352	13,147	12,983	12,671
	밭(C)	8,195	7,635	7,557	7,552	7,565	7,656
휴 경 농 지 면 적	계(D)	202	404	675	689	665	625
	논(E)	41	124	240	310	303	314
	밭(F)	161	280	435	379	362	311
휴경률 (%)	계(D/A)	0.9	1.9	3.2	3.3	3.2	3.1
	논(E/B)	0.3	0.9	1.8	2.4	2.3	2.5
	밭(F/C)	2.0	3.7	5.8	5.0	4.8	4.1

자료 :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지관리과

표-5. 식량 및 채소류의 1인당 소비추세

(단위 : kg/연간)

구분	85	90	91	92	93	94
양 곡	181.7	167.0	166.3	163.8	159.3	158.0
(미 곡)	128.1	119.6	116.3	112.9	110.2	108.3
채 소	98.6	132.6	130.8	130.9	153.4	132.8
과 실	35.8	41.0	48.0	51.9	47.2	46.0
육 류	14.4	19.9	21.7	23.9	24.3	25.8
(쇠고기)	(2.9)	(4.1)	(5.1)	(5.1)	(5.3)	(6.1)

이 높은 쪽으로 택하고 이들 소득작물의 산지인 밭을 대상으로 영농조건을 개선하여 경쟁

표-6. '93년도 농축산물 표준소득 총괄

(기준 : 10a)

작목별	수량 (kg)	조수입 (원)	경영비 (원)	소 득 (원)	소득률 (%)
식량작물		502,219	181,358	320,861	63.9
노지채소		1,271,966	377,549	894,417	70.3
시설채소		4,210,247	1,381,855	2,828,392	67.2
특용작물		822,840	293,783	529,057	64.3
과 수		2,127,555	595,992	1,531,563	72.0
화 훼		13,105,497	6,035,904	7,069,593	53.9
축 산 물		1,572,137	965,680	606,457	38.6

※ 전체소득률 : 63.4%

발기반정비사업과 효율적 추진방안

표-7. 농산물생산비 조사결과(1993년)

(기준 : 10a)

작목별	수량(kg)	조수입(원)	경영비(원)	소득(원)	소득률(%)	92소득(원)	93/92(원)
쌀	418	620,188	182,177	438,011	70.6	472,926	92.6
겉보리	234	248,878	92,677	156,201	62.8	174,821	89.3
쌀보리	266	278,507	108,450	170,057	61.1	198,750	85.5
마늘	1,084	1,584,411	414,873	1,169,538	73.8	615,648	190.0
양파	5,723	1,148,355	376,680	771,675	67.2	352,334	219.0
고추	219	1,511,087	326,566	1,184,521	78.4	1,223,104	96.8
참깨	35	410,399	89,981	320,418	78.1	448,159	71.5

자료 : 농림수산부

표-8. 농림수산물 주요품목별 수출

(단위 : 천원)

품목별	'92	'93잠정 (A)	'94전망 (B)	증감률 (B/A)	주요수출국
계	2,888,201	2,765,000	3,042,000	10.0	
○ 농축산물	800,257	805,000	822,000	2.1	
담배	4,274	6,400	7,000	9.4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인삼류	71,464	73,000	100,900	38.2	대만, 홍콩, 미국, 일본, 싱가포르
김치	23,089	34,600	36,000	4.0	일본, 미국
채소종자	12,174	7,700	8,000	3.9	일본
오이	2,286	2,150	2,900	34.9	일본
사과	25,205	7,420	12,000	61.7	대만, 싱가포르
배	3,832	4,300	5,000	16.3	미국, 싱가포르
돼지고기	42,843	66,000	75,000	13.6	일본
냉동딸기	3,204	4,400	3,300	△25.0	일본
한약재	23,243	20,000	23,000	15.0	일본, 홍콩, 대만
선인장	2,019	2,300	2,500	8.7	화란, 미국, 호주
백합	61	1,100	2,000	81.8	일본, 미국
라면	39,490	40,909	41,000	0.2	미국, 대만, 사우디
과자류	69,132	91,418	92,000	0.6	일본, 홍콩, 미국
기타	477,941	443,303	411,400	△7.2	
○ 임산물	569,815	450,000	620,000	37.8	
○ 수산물	1,518,129	1,510,000	1,600,000	6.0	

력을 강화해야 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국제 농림수산물 교역자유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수세적 농업에서 공격형 수출 농업으로 육성하여 기술 고품질을 바탕으로 수출가능국가 중심으로 우선 공략하여 개방화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수출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 바, 이들 수출

유망작목 모두가 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 ① 전국적인 휴경농지 증가경향에 따라 논의 휴경률이 1994기준으로 2.5%인데 비해 밭의 휴경률이 4.1%로 높으며,
- ② 휴경사유에서 노동력 부족이 44.3%로 제일크고

- ③ 휴경면적이 전국평균 3.1%이며
- ④ 국민1인당 농산물 소비량에서 곡물류는 점차 줄어 드는 반면 채소류는 늘어나고 있다.
- ⑤ 농산물 단위당 표준소득액에서 밭작물이 높은 것은 물론
- ⑥ 수출 유망작목 역시 밭작물에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때 앞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밭기반정비사업을 더욱 확대시행하므로써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채소, 과수, 화훼등 소득작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생력화 효과를 거두어야 겠다.

### 3. 1986~1993년 밭경지정리사업의 경험

강원도에서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17개 지구 359ha의 밭경지정리를 한바 있다. 강원도밭의 대부분이 경사지인 관계로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경지정리는 불가능하고 경사정지할 수 밖에 없으며 경사정지를 하더라도 토심이 낮으면 암반노출등 불량심토층만 남아 물리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경지정리 작업시 지표토의 이동으로 지표배수계통변경에 따른 배수문제와 성토부토 양유실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확정측량후 지적상 지구경계에서 불확실하였던 토지경계가 부지중에 편입되면서 금전청산 대상으로 될수 밖에 없어서 사업시행후 환지계획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군에서는 면사무소에 동의서 징구를 지시하고 면사무소에는 해당 지역 이장에게 부탁하여 시간에 쫓긴 나머지 이장이 보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 환지인가가 되고 등기완료된 후 금전청산 통보시 이의가 발생되어 인장도용의 형사사건까지 이르고 사건수습을 위해 금전

청산금의 몇배의 지가를 별도로 관계공무원이 치르고 끝난 사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다.

### 4. 1994년시행 밭기반정비사업의 종합분석

1993년까지의 밭경지정리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1994년부터 시행된 밭기반정비사업은 구획정리가 아닌 종전 경지형태를 둔 상태에서 기존배수관행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영농에 필요한 경지정리, 파종, 예취작업, 수확물 운반을 위해 농기계 출입에 이용될 농로를 배치하고 밭작물은 품질과 신선도가 상품성을 좌우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관개시설을 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1994년에 착수한 밭기반정비사업 18개지역 440ha에 대한 사업시행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과 문제점등을 다음과 같이 검토, 분석한다.

표-9.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일정(1994~1995년)

구분	'94년도사업	'95년도사업
○ 예정지 조사	29개지구 '94.5.16→도에 보고	18개지구 '94.11.3
○ 기본조사	29개지구 '94.6.27→도에 제출	18개지구 '95.2.6
○ 물리탐사 및 착정	'94.7.13~'94.10.5	'95.3.21 ~'95.8.30
○ 실시설계	18개지구 '94.10.30 시군시행	'95.9.30
○ 시행인가	18개지구 '94.12.9도→시군	'95.10.16 인가처리중
○ 준 공	'95.6.12	'96년 봄파종 이전에 완료계획

#### 1) 추진일정

밭기반정비사업의 주요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예정지조사 : 1994.5.16까지는 시장군수

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 기본조사 : 1994.6.15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994.6.27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타당성이 있는 지구에 실시계획지구를 확정
- 실시설계 : 1994.8.30까지 완료하도록 농림수산부의 지시가 있었으나, 수원공인 지하수 착정이 완료된 후인(1994.10.5이후) 실시설계에 착수, 1994.10.30 설계완료하고 1994.12.9까지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 사업착수 : 1994.9.30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지침상의 계획이 실제 1994.12월 중순이후로 늦어짐에 따라 사업시행은 부득이 1995년으로 이월되어 1995.6월에 사업준공을 보게 되었다.

## 2) 도로

도로의 밀도는 지선농로를 포함하여 82m/ha 수준이며, 농경지정리 120m/ha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필지별 농기계 접근이 불리하여 파종이나 예취작업과 수확물운반등이 논경지정리에 비하여 불리한 수준에 있다. 도로밀도가 낮은 원인은 첫째, 한정된 사업비로 공사를 계획시공해야하는 것과, 둘째 진입도로 이외에는 편입용지 보상이 없기 때문에 편입토지 소유농민들의 반대하는것 등을 들수 있다.

## 3) 용수시설 및 배수시설

관정에서 양수한 물은 용수공급이 최대가 될때 부족한 용수를 보충하고, 단전으로 인한 급수중단을 대비하기 위하여 축조한 저수조로 보내 여기서 저수한후 자연유하식으로 관로에

의하여 지구내 각 필지별로 분수공(급수주)에서 급수되도록 설치하였다.

저수조의 크기는 평균 개당 38m<sup>3</sup>로 2.59m<sup>3</sup>/ha이다. 수원공 양수량 15.87m<sup>3</sup>/일/ha (0.66m<sup>3</sup>/hr/ha)의 평균 4시간분(2hr~50hr)이며 지구별 규모 수준의 차가 매우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배수로 시설은 소요사업비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되어 대체로 기존배수관행에 의존 자연형성배수로(구거)를 이용할수 밖에 없다. 새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한 배수로 연장은 21m/ha로 아주 미흡한 수준에 있다.

1994년에 시행한 강원도 발기반정비사업중 현재 여건에 따라 구획정리까지 한것은 1개지구 5.4ha이고, 관개방법으로는 스프링클러 97ha(22%), 고랑관개 131ha(30%), 호스 181ha(43%), 점적 24ha(5%)이며, 영농방법으로는 노지재배 416.2ha(95%), 비닐하우스 23.8ha(5%)로 조사되었다.

## 4) 민원사례

1994년에 시행한 발기반정비사업추진중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사항으로는 무상 도로용지 편입문제로 “한번 도로에 들어가면 영원히 받을 잃게 된다.”는 농민정서는 바꿀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계통의 변화가 집중호우시 수해의 원인이 되어 새로운 민원대상이 되었으며, 관로 터파가시 하부석력의 노출로 석력제거 및 양질토복토요구 사례도 있다.

그리고 공사착수이전 작물파종에 따른 작물보상요구등이 있었다. 사업완료후 지구내 농민이 자치관리하는 데 물사용량이 각각 영농방법과 작물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수량에 따라 관리비, 전기료 배분에 기준이 될 사용수량 검측에도 계량기 미부착으로 문제가 있다.

또 전기사용료가 눈에 비해서 너무 높아 눈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으로 낮추어 줄것을 요망하는 민원이 있었다.

### 5. 문제점과 대책

1994년 사업경험과 1995년 사업추진과정에서 노출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년도에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시행을 다음년도까지 이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착수 전년도에 기본조사까지 완료하고, 시행지구를 확

정하여 시행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수 조사가 완료된 지구라면 좋겠지만 안된지구라면 시행년초에는 물리탐사를 하여 수원공개발(암반관정착정)을 해당년도 작목과 종이전에 완료한 후 이에 따라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도로, 배수로등 세부계획을 설계에 반영, 추수가 끝나는 즉시 토목공사가 착수가능하도록 하여 다음년도 파종이전에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겠다.

둘째, 소요사업비와 국고보조율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먼저 ha당 예산단비에서 1995년기준으로 22,000천원/ha이나, 30,000천원/ha이

표-10. 발기반정비사업 ha당 단비 및 국고보조율

구 분	단 비(천원)	보 조 율 (%)					비 고
		계	국 고	지 방 비			
				소 계	도 비	군 비	
1994년	22,000	100	60	40	20	20	진입도로 용지매수 허용
1995년	22,000	100	70	30	15	15	진입도로 용지매수 허용
1996년	22,000	100	80	20	10	10	기본조사비 별도, 공공용지매수 허용

상 현실화되거나 설계산출액대로 시행가능하도록 현실화되어 필요한 시설이 전량추진되어 개발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상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논경지정리수준인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국비지원을 상향조정이 필요한바 1996년도 시행사업비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발기반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로, 수원공, 용수로, 배수로, 발경지정리등으로 구분되는 데 사업의 시행경험이 짧은 관계로 경험적 설계자료가 미흡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 설계자료가 이론적으로 정립,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이 완료된 다음 자치적으로 유지

관리함에 있어 최소한 필요경비의 부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상수도과 같이 개별 급수전에 계량기를 부착하여 사용수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전기사용료 및 각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징수해야 지구내 자치구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들 자치구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어떤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발기반정비사업지구의 한전 전기사용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표-11과 같이 논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력 “갑”을 적용하여 기본요금 kw당 300원+전력량요금 18.30원/kwh이나, 밭의 경우에는 “병”을 적용하여 kw당

표-11. 농사용 전력요금

구 분	기본요금 (ha당)	전력량요금 (kwh당)	비 고
갑	300	18.30	
을	810	23.50	
병	950	32.40	

950원+전력량요금 32.40원/kwh으로 논 3 배에 해당되어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있다.

농사용전력은 영농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원가수준이하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대로 논농사와 동일한 전력료가 되도록 한전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실제사업시행기관인 시군의 건의에 따르면 설계 및 지하수개발업자를 시행청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사업시기 단축 등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6.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기본계획 확정시 기본조사내용은 농민의 의견, 지형조건, 사업비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조사착수시 지역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개발방향을 구상하고 조사과정에서 협의내용을 조정하거나 농민의 요구조건중 시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 사업시행 시민원발생 예상요소를 사전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경작도로 배치시 용지보상에 관해서는 현재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진입도로구간만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경지내 도로는 보상이 없으므로 일반도시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이론중 연도 부담 즉, 정리후 접면도로의 폭원에 따라 받는 이익이 자우된다는 관념에서 접면도로의 면적일부를 시행규정에 정함(폭원 8m이하일 때는 1/2, 그 이상일 때는 적절히

조정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연도부담으로서 그 택지의 기준면적에서 감보하여 도로면적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접면도로의 사용이익은 연도토지 소유자가 제일 크다는 논리이다. 연도 감보에서 제외된 공공시설용지는 지역내 공통 감보면적을 산정, 금전 청산이론에 따라 주민부담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발기반정비사업의 발전적 추진방향

1) 발기반정비는 기계화 영농을 감안하여 모든 필지에 농로와 용수로가 접하도록 구획정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수평정지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지구여건에 따라 경사정지 표토처리를 병행하면서 소유필지 구획정리, 발두령 바로잡기가 이루어져 기계화 효율을 증대시켜 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2) 발기반정비후 타사업과 연계되는 영농방법에 맞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민이 원하는 시설을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선택적으로 개발하여 한다.

특히 시설채소, 양념채소, 고냉지채소, 과수생산, 화훼생산, 특작생산등 국고보조 유통지원사업과 연계시행이 되도록 농업생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의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발기반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다.

3) 이를 통하여 신농정의 진로인 토지절약형 농업, 생력화 농업, 전천후 농업, 생산조절이 가능한 농업으로 갈수 있을 것이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군은 지역특성을 최

대한 활용한 특수 작목을 개발, 브랜드화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산기반을 발기반정비사업을 통해 구축해 가야한다.

4) 농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난 20년동안 토지의 생산성은 2.5~4배를 증가 하였으나, 물질소득만을 추구하다보니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켜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정책의 연구과제가 요구되는바 농촌환경의 우호적인 청정기술을 병행하여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울창한 마을과 경지가 조화 있게 연계되는 종합적인 전원풍경을 창조, 인간의 건강과 지속적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확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수 있는 윤택한 삶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겠다.

## 8. 결 언

1960년대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및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농업 노동력은 고령화하는 등 농업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 근로 의욕이 감퇴 되고 있으며 더우기 WTO체제 출범, 세계화의 진전과 민주화의 성숙 및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급격한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과거 생계 농업에서 상업적, 기업적 경영농업으로 전환하여 각지역마다 지역특성을 최대한 이용, 경쟁력 있는 작목을 찾아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지방화 시대에서의 일류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미 발표된 농어촌발전대책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작목의 생산터전인 밭의 기반정비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농산물이 전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석권할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작목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화, 생력화, 첨단기술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고도산업사회의 다양한 업종속에서 유능한 인재가 자신있게 선택할수 있는 농업이 될수 있는 기틀을 발기반정비를 통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농림수산부, 발기반정비사업 실시요령, 1994
2. 농림수산부, 발기반정비사업 추진발향, 1995
3. 농림수산부, 발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요령, 1995
4. 농림수산부, 주요 농림수산통계, 1995
5. 농업진흥공사 농업토목시험연구소, 발기반 조성연구, 1986
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수출진흥 세부실천 계획, 1995
7. 강원도, WTO체제에 대응한 강원도농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 중간보고, 1995
8.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계획 추진방향 세부실천계획, 1994
9. 농어촌진흥공사, 유희·한계농지의 다목적 활용방안, 1995
10. 농업유역의 하천관리와 생태계복원, 강원대학교 농공학과 최종대